

▣ 제 2 주 제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가능성 검토

임 상 혁

(서울 제6중재부 중재위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2021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인격권 보호』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가능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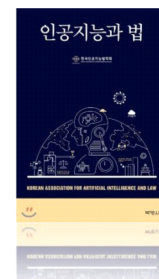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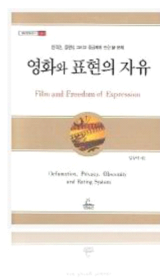
2021. 12. 22. 임 상혁

### Introduction

임 상혁

- ◆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 ◆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 ◆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 서울대 로스쿨 법학박사(JD)
-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국제이사
-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I. 현행법 해석론

## I. 현행법 해석론

### ○ 1인 미디어의 증가와 언론중재위원회 역할 검토

- 최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를 통한 '보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접근의 용이성, 신속성, 특정 분야 전문성 등)
-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등 기존 매체에 못지 않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됨
- 기존 매체들도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유튜브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도'로 인식
- '보도 매체'에 의한 피해로 인식하여 언론위 제소 증가
- 팟캐스트 등의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 가능성, 아니라면 불균형성 존재
- 기존 언론위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당사자적격, 집행가능성 등)
-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기존 매체, 1인 매체 스스로도 혼동을 느끼고 있는 상태
-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기준이 필요한 상황

## I. 현행법 해석론

### ○ 피신청인 적격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 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을 말한다.
- 8 “뉴스통신”이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말한다.
- 10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 I. 현행법 해석론

### ○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사회적 책임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 ①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신장하여야 한다.
- ②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 보도, 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6

## I. 현행법 해석론

### ○ 언론중재법 피해구제 원칙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 I. 현행법 해석론

### ○ 피신청인 적격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2. “인터넷신문”이란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8

## I. 현행법 해석론

### ○ 피신청인 적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인터넷신문)

①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건수의 30/100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의 계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30/10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신문사업자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 I. 현행법 해석론

### ○ 피신청인 적격의 확장 가능성 검토

- 현행법상 '인터넷신문'에 대한 피신청인의 적격은 신문진흥법 시행령으로 규제
- 일정한 요건이 필요(독자적인 기사생산 요건, 지속적인 발행 요건)
- 물적 인적 요건(취재인력 3인 이상 포함 취재 및 편집인력 5인 이상 상시 고용)은 위헌판결로 삭제
- 피신청인 적격에 '등록' 등의 요건이 없음 → 언론위 내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
- 언론중재법의 목적조항(제1조)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해석 필요
- '인터넷신문'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 → 해석의 한계 설정 문제
- 양 당사자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하는 사례 증가

## II. 실제 조정사례 분석

## II. 실제 조정 사례 분석

### ○ 조정 사례의 구별

- 1 유형: 기존 언론사가 보도를 하면서, 유튜브가 같이 올라간 경우
- 2 유형: 기존 언론사가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유튜브 기사만 올라간 경우
- 3 유형: 뉴스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버가, 명예훼손적 기사를 올린 경우
- 4 유형: 뉴스전문을 표방하지 않는 유튜버가, 명예훼손적 기사를 올린 경우



## II. 실제 조정사례 분석

### ○ 언론위의 실제 조정사례

- 신청인: 000 피신청인: MBC-TV, iMBC
- 신청취지: 무속인 피해 관련 내용 / 정정, 반론, 손해
- 조정 내용:
  - 양 당사자 출석하여, 반론보도로 합의
  - 조정결정내용
    - 가. iMBC 홈페이지 해당 기사 시청자의견 게시판에 반론보도문 24시간 게재
    - 나. 해당 영상 하단 설명에 제1항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 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가호 및 나호 사항을 전송

13

## II. 실제 조정사례 분석

### ○ 언론위의 실제 조정사례

- 신청인: 00교회 피신청인: JTBC, 인터넷 JTBC
- 신청취지: 교회내 폭행 관련 내용 / 정정, 반론, 손해
- 조정 내용:
  - 양 당사자 출석하여, 반론보도에 합의
  - 조정결정내용
    - 가. JTBC 홈페이지 해당 기사 시청자의견 게시판에 반론보도문 게재
    - 나. 해당 보도 다시보기 영상 말미에 자막 게재
    - 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가호 및 나호 사항을 전송
    - 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JTBC News)에도 위 사항 반영
  - 원 보도에 대해 합의 성립시, 관련 유튜브 채널도 같이 합의되는 것이 일반적

14

## II. 실제 조정사례 분석

### ○ 언론위의 실제 조정사례

➤ 신청인: 000 피신청인: KBS(KBS 시사직격 YouTube 채널)

➤ 신청취지: 기사에 제보자 음성노출 / 손배 2천만원

➤ 조정 경과:

원 보도(2011년에 보도)는 제척기간 도과

원 보도는 음성변조가 이루어졌으나, 다시보기 형태로 KBS가 운영하는 YouTube 채널에 게재(2021년)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음성 변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새롭게 피해가 발생

피신청인은 이 사건 매체가 언론조정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모호. 하지만 음성 변조 과정에서 기술적 실수가 있었음은 인정되므로 금전배상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양 당사자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

피신청인이 일부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금액차이로 조정불성립.

15

## II. 실제 조정사례 분석

### ○ 언론위의 실제 조정사례

➤ 신청인: 000 피신청인: (재)씨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 YouTube 채널)

➤ 신청취지: 학력 경력 위조 / 정정, 반론, 손배

➤ 조정 경과:

이 사건 보도는 CBS 라디오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가 끝나고 바로 이어 YouTube 채널에서만 방송되는 유튜브 콘텐츠 <땃꿀쇼>에 나오는 내용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는 유튜브 콘텐츠로 언론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각하 가능성을 안내

각하 요건 검토(법 21조 1항, 중재규칙 19조 1항 '조정신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이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

16

## II. 실제 조정사례 분석

### ○ 언론위의 실제 조정사례

- 신청인: 000    피신청인: 이포커스미디어(이포커스 YouTube 채널)
- 대상기사 및 신청취지: 연예인 협박 혐의 고발되었다는 기사에 신상 노출 / 손해 3백만원
- 조정 경과:
  - (주)이포커스미디어는 주된 언론활동을 유튜브를 통해 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임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이포커스TV)의 기사3건이 문제됨.
  - 인기 연예인과 관련되어 조회수 1위를 기록
  - 조정신청 후 해당 기사는 모두 자발적으로 삭제
  - 피신청인은 조정 대상 매체가 아니라는 항변을 하지 않았음
  - 양 당사자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
  - 조정성립(손배 100만원)

17

## II. 실제 조정사례 분석

### ○ 언론위의 실제 조정사례

- 신청인: 00교육청    피신청인: (주)열린공감티브이(열린공감TV YouTube 채널)
- 대상기사 및 신청취지: 교원 징계 후 자살 책임 관련 / 정정보도
- 조정 경과:
  - (주)열린공감티브이는 주된 언론활동을 유튜브를 통해 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으로, “유튜브 플랫폼 인터넷언론사 독립매체”를 표방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조정 대상 매체가 아니라는 항변을 하지 않음
  - 양 당사자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
  - 피신청인은 반론보도 수용의사 있으나,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주장하여, 조정불성립

18

## II. 실제 조정사례 분석

### ○ 언론위의 실제 조정사례

- 신청인: 000    피신청인: 000(팩트TV)
- 대상기사 및 신청취지: 유치원 비리 보도 관련 / 정정보도, 추후보도
- 조정 경과:
  - 팩트TV는 인터넷 대안방송을 내세우며, 인터넷 종합편성방송을 표방함
  - 피신청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항변을 하지 않음
  - 양 당사자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
  - 기사삭제, 정정보도, 추후보도에 합의

19

## II. 실제 조정사례 분석

### ○ 언론위의 실제 조정사례

- 신청인: 000    피신청인: 000(한인협 YouTube 채널)
- 대상기사 및 신청취지: 유치원 비리 보도 관련 / 추후보도, 손배, 검색열람차단
- 조정 경과:
  - 피신청인은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매체인지 모르겠다는 입장
  - 피신청인이 관련법상 '인터넷뉴스'가 아니어서 각하 가능성 안내
  - 이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

20

## II. 실제 조정사례 분석

### ○ 연중위의 실제 조정사례

- 신청인: OO항공 피신청인: (주)포커스데일리
- 대상기사 및 신청취지: 부동산투기 및 자금출처 의혹 관련 / 정정보도, 손해
- 조정 경과:
  - 해당기사는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티스토리>에 게재
  - 해당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타 매체(미디어인뉴스) 소속 기자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매체인지 모르겠다는 입장
  - 피신청인이 관련법상 '인터넷뉴스'가 아니어서 각하 가능성 안내
  - 이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

## III. 향후 전망 및 입법 제안

## II 향후 전망 및 입법 제안

- 실질적인 언론기능을 수행하는 1인 매체의 증가로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구제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증대
- 언론위의 적극적인 해결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증대하는 시점
- 1인 미디어가 현행법상 언론위 조정대상인지?
- 포섭을 하는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대상으로 할지?
-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강제력이 있을지?
- 강제력이 없는 경우, 기존 매체와의 형평성 문제, 언론위의 권위 문제
-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부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3

## II 향후 전망 및 입법 제안

- 1 유형: 기존 언론사가 보도를 하면서, 유튜브가 같이 올라간 경우  
→ 원칙적인 조정 대상 1
- 2 유형: 기존 언론사가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유튜브 기사만 올라간 경우  
→ 원칙적인 조정 대상 2
- 3 유형: 뉴스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버가, 명예훼손적 기사를 올린 경우  
→ 적극적인 조정 안내 및 노력
- 4 유형: 뉴스전문을 표방하지 않는 유튜버가, 명예훼손적 기사를 올린 경우  
→ 현행법상 조정 대상 X

24

## Ⅱ 향후 전망 및 법개정 고려사항

- 향후 1인 미디어에 대한 피해 사례 및 조정 신청 증가 예상
- 조정 신청시 당사자 의사 파악 등에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각하 요건 검토(법 21조 1항, 중재규칙 19조 1항 '조정신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당사자 출석 후 조정합의에 이른 경우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합의 후에 추후 불복 가능성 → 합의문에 소권포기 포함 등
  - 직권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시 소제기 간주 조항
- 법 24조 중재합의조항(중재결정에 종국적으로 따르기로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의 활용 가능성
- 언론중재법이나 신문법 등의 관련 조항의 재검토 및 개정 필요

25

감사합니다!!!



임 상혁 변호사/ 법학박사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